#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8.29.(금)]



· 각동지상층출입구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소방용 연결송수구,상수도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창 공용부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나누기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시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 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기</u>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	<b>☎</b> 032-325-60	55)
주특	<b>박유형</b>	i	해당지역				기티	지역	규제지역여부	<u> </u>
-	UG UG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자					비규제지역			
	재당침	제한	전매저	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기상한제	택지유형	
	없	읔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 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8.29.(금)	2025.09.08.(월)	2025.09.09.(호)	2025.09.10.	(수)	2025.09.16(草)		2025.09.18.(목) ~2025.09.20.(토)	2025.09.29.(월) ~2025.10.01.(수)	

**■당첨자선정순서**:①소득구분→②순위→③지역→④미성년자녀수→⑤추첨

1순위

■소득기준 -소득확인시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20250829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웤평균 소득 기준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당첨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기점상한

후 10년 이 어지택주무 고자우배 인지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나목)

가점항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부처시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서욱틀볔시 인처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파 단하네 이상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자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가점<del>구분</del>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3년미만

6년이상~7년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6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8년미만

ェ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기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기입 기간 점수를 합신하지 않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에서본 가격력 등급입 표당 사람에서 당하는 그는 가는 모든 사람이 받는 등 당하나는 분 ■ 일주자모장공입형 학자근로자 당한 자료시 되면 이상 스위를 납부 \*\*한 분 일 함께 됩니다. \*과거 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기를 납부한 분을 포함

1단계 산생아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일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단계 오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1인가구

※출사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가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각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25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85m<sup>2</sup>이하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전용면적별1순위기점제/추첨제적용비율

-점산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2나목)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②지역: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

2단계 신생아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되는 날을 포함한다)이 자녀가 있는 본으로서 세대의 열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미혼인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sup>각</sup>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지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공동주택(0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J주(예정)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②청약부금·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남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이상인 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황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5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7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7년이상~8년미만

및배우자의 당점사실확인서를 사업수제에세술하며 악걱암을 증명해야요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본인청약기점점수=①+②+③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기입기간(50% 적용)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성약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기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가까운 날에 공

되기 전에 혼안한 경우에는 기쪽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때론 혼안면체증명사에 혼안신고일로 등재된 날보더 무주택기간을 기산한 이 경우 주택공급 산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 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 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앙기족으로 본다 다만,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앙기족으로 보지 않으며, 이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작계존속도 부앙기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내기는 가내는 기 나타면 전체은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12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 내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직계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작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기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이혼한자녀는 미혼인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이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당청사실확인서발급: 청약홈 > 청약초통방 > APT당청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환재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기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방을 위하여 당첨

F지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분

조성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않음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종인 경우 - (만30세 미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종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약

5)확인방반(0주민등록표등초본(2)7족관계증명서(3)만18세이상성년자녀부당기족인정신청시추가확인서류 - 만18세이상~만30세미만:자녀훈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이상:자녀훈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기업기간 ※단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추첨제 물량의 75%

1단계공급후잔여물링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단,청약저축에서종합저축으로전환한경우전환개설한날을기준으로함

※2024.03.25.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 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신할 수 있습니다.

단세대원의실종등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대상에서제외

■ ③청약통장기입기간:기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단,청약저축에서종합저축으로전환한경우전환개설한날을기준으로함

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경우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 만60세 이상의 작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나.1인가구(혼인중이아니면서 미혼인자녀도 없는 분)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독세대가이닌 분이란 작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정하는소득기준또는자산기준을충족하는 함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본인청약가점점수=①+②+③

- 모든 세대구선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단독 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 원에 해당하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이하 주택형에

혼인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 신·입양·입주 시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상시근로자근로소득확인시점

- CC 8~P H 10070 소파이다. 10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열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지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상의 총급여액/20번) 및 소득금액증명상 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제작증명사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시압기간(사업자등록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 자신기준 [부동신기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160%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토지기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구 읍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지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

인천광역시(그밖의광역시) 서울특별시(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광역시를 제외한지역)

200만원

11년이상~12년미만

12년 이상~13년 미만

13년이상~14년미만

14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6명이상

10년이상~11년미만

11년이상~12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300만원

건축물가액에 토지기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기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기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②가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기점제 적용 기준에 따른 청악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악기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는 가 IC. |너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100% 초과

※9인이상기구소득기준:8인기구원수별기구당월평균소득+{1인당평균소득(702038)x(N-8)} \*N→9인이상기구원석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확인 압앙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압앙관계증명서를 통해확인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 가액 3억

※단계별 낙참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산창자 중 낙참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된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③지역 →④이성년자녀수→⑤추참의 순서에 따라 산정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 자녀 포함) 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

· 현재·혼인단계인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②순위 판단 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출신(테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앙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산입양입주시출산 및입양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시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있는경우 140%이하 10,087,437원 12,009,33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15,592,027원 일반공급 부부모두 120%초과 8,646,375원~ 10,293,707원~ 10,837,259원~ 11,679,704원~ 12,522,150원~ 13,634,595원~

%(기구)와 산정 기증 무주택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주신름 인정하되 공급산청사의 작계존속(공급산청자의 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은 입주 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산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

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 자산기준[부동산기액산출기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및 「공공주택임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2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공동주택(아파트 여린 다세다

소등이있는경우 160%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996,195원 부부중한명만 140%초과하나 10,007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996,1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무송한명만 140%초과하나,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17810,459원 14609175원 15592,028원 17810,459원 14609175원 15592,028원 17810,459원 14609175원 15592,028원 15592,028

무무 보누 150% 초과하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예층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00%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120%이하 30~57~2 10257~62 10357~2 1707.57~2 1222.7~2 152~2 152~2

-건축물 기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토지 기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

중에 마고 게임되고 보이 되는 대학에 다입되고 가 이 에 다 하는 그 가 다. 아니라 아니라 마다 다 아니게 다르는 다. 아그 사 입주에 하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중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사자가 기준)

14

16

4

공동주택가격(국투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기점구분

8년이상~9년미만

10년이상~11년미만

11년 이상~12년 미만

12년이상~13년미만

13년 이상~14년 미만

14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8년이상~9년미만

10년이상~11년미만

11년 0상~12년 미만

12년이상~13년미만

13년이상~14년미만

15년 이상

전용면적 85m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8

사업자및프리랜서등소득확인시점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렌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리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u>해 **서는 창악자 본인에게 책임** 있으니 자세한 문의 시형은 사업주체를 통해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인하여 주시기를 비랍니다. 로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참자를 대상으로 잔산조회, 제출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면 부적격 당첨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산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통장자격요건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요건 소득또는자산기준 ※단,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장에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1순위: 인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고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하였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창약홈 및 나 창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창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기능하며, 2건 이상 중 복산청시 모두 무효차리 또는 당첨자산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에 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악하시기를 내립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참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참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신관리 되며, 사용한 창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기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며열지구 및 청약과열계 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 손자외손녀등 마.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의 작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함 (예) 전혼자녀 등 - 무구택세대 사용한이란 세대원 전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인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201812대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호인 제23조제/항,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일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긴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기타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이 범위(국도교통부형 부치 제조, 제65호, 2018)(2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21)) 이후 입주지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된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작계존속과 작계존속의 배우자는 기점제 항목의 부양기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기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공급 유형별로 입주지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지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 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인주자 순반에 따라 인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인주자를 인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란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각 공급 잔여물랑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랑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 ~~물론을 다시들은 극물론을 대비를 가지에게 당당하고, 보안들면 산에들은 발언을 다시면 가지에게 당당하고 극물론을 대비할 구시에게 당당하고 된다. 물론을 받았는데 한다면 가지에게 다양하고 있는데 표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구최, 제권조제(중에)에 가 예비입주지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지로 선정된 본 역에 메일주지로 수택을 공급받을 수 않았어 ( 빠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지의 동·호수배정일(당참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제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차리됩니다. ■서정되(에비인주자)청확은 최초 고근계약 체격익부터 1809까지(에비인주자가 소지된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하) 당시인 이터넷 호텔(이지/https://오정해모로스마트시티cmn)에 공개하며 공개기가이 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기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축인코사실증명서 해외체류가 [10] 계속하여 90일을 초고하기 [10]로 후 7일 내 동일코가 재촉궁 시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 것으로 봄은 코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간설지역으로 폴립노시크등장이 발대처음 (1년 기록)에 어찌르를 교육한 기급 보다 후 기를 내려 중국 기급 등 시기를 가지 내려가 하는데 한다면 가득한 그를 다 하는데 그는데 그를 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자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참약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무진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산자로 국외 체류기가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고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산자로 북이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9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장애인 다자녀가구(단,**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제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제(또 보다가 보급으로 본데) 보면 가이스를 포로 그래에 내려가 되었다. 분 또는 그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역사에는 참약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확한한 당찬자에게 해당 층을 우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최하층 우산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산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화기하: 인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장악에는 자역간에 자네라고 프로젝션 : 장악에는 자역간에 다른 책 가에 중축기한, 청약 접수당일까지 충족 시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가지면 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합 중

- 청악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압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에처금액 충족 시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중합자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압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현·에는 청약부급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기한: 입주자모집보고 전일까지 전환개설원료 시 청약신청가능

• 종전통장(현·에는 청약부급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기한: 입주자모집보고 전일까지 전환개설원료 시 청약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국민주택 청약시 기존 청약통장기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참약자 본인이 작접확인 후 창약하시어 부적격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형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청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만간 사전청약 ᆾᠸᠵᢗᡳ완공공급사다~역소입의 답구사도 안공물 ㅜ 하급하다. 발 "주목님금에 한한 구워,제장조자(항에 따다 주역의 금급계인은 임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시십 공고일부터 IT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리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이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0 ※단.APT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기능합니다.

# l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5.09.08.(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건본주택주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중동 113+5번지) #**법** | •(현장접수)사업주체견본주택 | •(현장접수)청약통장기입은행 ※ 코밧부(코구/복지Fh0ll서 추처하 "25년 이상 장기복무구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불기합니다 

를 막답하다. 본 이피는는 수도권내 비투기 파열자구 및 비청약과열자역의 인간택자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인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른 재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 택당참여부약 관계없이 본 이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단 참약통장의 재사용을 하용하는 제도가이나 I므로 당첨된 참착통장은 제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자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원) 거주자격으로 참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자역 거주자격으로 참약은 불가함) ■ 201(102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양원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압주자 산정 훈련,제18조에 따른 가전 이상 장기복무 고인 중 국방부(국군복자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 과 = 10 T T 18:L7 29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교 부동사가에신고 지금조달 및 업주계획사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자설자역인 경기도 부창사는 비투기관열자구 및 바양악관업자역으로 '부동산가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경, 제3조 및 별표1 규정 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배 개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가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업주할지 여부, 인주 예 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가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시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는 아마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 마열지구 및 비행인과열지역비스로 사내가 들는 아마트를 받는 아마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 가입니다. 제한 제한 및 제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본 이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 마열지구 및 비행인과열지역비스로 사용지역인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정,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다. 한 게 납부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로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납부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체결 시시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고세 기존에 해당하는 인지네를 연대하여 고등 남부하기로 합니다. -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남부하지 않거나 괴소 남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정부/ 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지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o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2012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비랍니다:※ 납부세액: 부동산 가라게약사와 실자가라가격분양대급 + 프피마엄을 가자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 한 하나도 X0221231 깨장된 인자네한 제8조 제형에 따라 공급계약인 숙하는 달의 다음 달 19일까지 인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이후 부작적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등의 사유로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자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본 임주자단집공고로은 작성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사공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6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동 총 200세대[조합 153세대] 중 일반분양 47세대 [특별공급 21세대(신혼부부 12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 m², 세대) 2025000251 01 0429802A 42A 429802 1777474 60.7276 39.4969 100.2245 246310 47 12 1 8 21 26 4 \_\_\_\_\_\_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 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 0.3025 또는 공급면적(mi)÷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 주치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 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이하의 증감에 대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구분(약식표기)	42A	합계
신 <del>혼부부</del> 특별 <del>공급</del>	12	12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	1
생애최초 특별 <del>공급</del>	8	8
합계	21	21
주택형별 특별 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을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	명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

			합계					21				21		
※ 주택	백형별 특	별공급	급대상 세대4	수는 공급세대	ዘ수, 비율 등	을 감안하0	여 배정하였	으며 배정 호	수가 없는 주	트택형에 대해	해 신청할 수	없음.		
■ 주택	i형 표시	안내												
		공고	그상(청약시)주택	백형						042.9802A				
			약식표기							42A				
■ 공급	급액 및	납부임	일정										(단위	i : 세대, 원
주택형		뺭		분양가격		계약	금(5%)			중도금	(60%)			잔금(35%)
변 (약 (화 (화)	층 -ૠ	세대	-11-1-1	-12	-"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건급(33/0
亚川)	12	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025.11.17	2026.02.16	2026.05.15	2026.08.17	2026.11.16	2027.02.15	입주지정일
	2층	4	95,467,400	263,432,600	358,900,000	5,000,000	12,945,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109,140,00
- 1						1			I					

3巻 4 97.542,200 269,157,800 366,700,000 5,000,000 13,335,000 36,670,000 36, F 99,590,400 274,809,600 374,400,000 5,000,000 13,72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37,440,000 110,130,000 5-9층 | 19 | 102,676,000 | 283,324,000 | 386,000,000 | 5,000,000 | 14,3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 10-15층 16 103,666,800 286,113,200 389,800,000 5,000,000 14,49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114,39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충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 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 공간 등은 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 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치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 전용+주거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등 기 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 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남,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 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인수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기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시항은 공급계 - 분앙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나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앙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시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 악신청가능	- 적용회수 제하 없음
이력배제)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 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약중축구세인 값급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악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 다라도 이를 배제하고 창악신청 가능	-혼인특례는본인기준1회에 한하여 적용기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호부부, 노부모부양, 산성이(중품)	24.619.이후 출생한 자나(테아 또는 '24.619.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 악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라도 제55조에 때른 특별공급 횟수 재한에도 불구하고 청악신청가 당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다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다주 요간에도 불구하고 청악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 악신청 가능  *기존소락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간을 모두 갖춰야함  -1기존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구리,제2조조제성항 각 호를 시압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전등기 전에 기존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1 이 경우, 신혼부탁 특별공급 공공주택제 외우 추점제 장막신청 가능 다음 기반으로 가수 소리 이는 조택이 기약으로 하나 하다 않으.	- 출산특례는 세대기준 İ호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시항은 바할수 없은 - 청약산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된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산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 급에 당첨된 이렇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청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국내로 가장하는 다꾸러 구름으면 보다가 못하게 되가는 모습을 즐거게 가장 함께 되는 그를 모습 등을 가장 그렇게 되었다. 그는 그는 그렇게 되었다. 그는 그는 그리고 내려 가장 그렇게 되었다. 그런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 ※기존주택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기합니다

구분			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1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1	타레에 한장하여 세대 '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약) 인 이상이 참약하게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창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참시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창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곣급	당천	지발표일이다른 주택	당첨지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지발표일</b> 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沦	당첨자발표일이같은주택	부부가중복당첨된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신)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 파도 타이노트80-로 단시마 (그리고) 6 이용이 가파스 또 위에 9 구용으로 보인 가기를 포함하는 바람 기를 보고 하는 이용 가게 되었다. 를 받음 한 경기 가입니다. ■ 일국인은 주인등 확합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인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참약이 불기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 시항" p.2 참조)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청약통장 자격Ω건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③주택청약홍합저축: 주택청약증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주택에 신청가능'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한 창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당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I 한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 한 창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	창약통장 볼필요)/디자냐기구/신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납부한 월납압안정금액이 예치금액 이 (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 납부한 월납압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	는 기구 (1995) 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주택형에 한함) 순위자 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주택형에 한함)
MATE	구분	그밖의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및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m'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로마가는 내용으로 전세하고 다른 아름 기로 전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가만을 포함 인분 후인 기간이 7년 아내훈안신고일 기존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가만을 포함 인분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청약통장기입기간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한분

진공구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전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워은 가전제 청약이 북가하며 가전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된니!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지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기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25%)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함)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모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부부중 1인의소득은 140% 이하여야함)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3단계 (2%) 서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아하)한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력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

본인신청시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이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내리 사장자의 수반등록하내학간는 어떤 또는 판단로 마하는 시 아이는 아이들에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시 국가인 등록 하나 있다. 이 등록 하나 있는 외국인 등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중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 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 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데이터**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라는 서비스입니다 G 리스 C가에 다른 스로 시에 가는 하는 그 가는 다른 그를 다 하는 것으로 하는 그는 아니아 마음 가는 에 중에 가는 가는 것으로 가고요...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시망 연결이 활활하지 않은 경우 및 안에 기반정보 보유 기반이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참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참약도움이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나 세대원

-**이용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세대구성원 등록 생략시 신청자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약 전 : 영국을 내용 : 교수학교는 이 ㅋㅋㅋㅋ-- 조화기간: 2005(의)6(화)-2025(의)(0인)일 - 조화기간(10일)이지나더라도 (2마이페이지→ 참약제한사항확인 또는 (2형약산통방 → APT(참사실 조희를 통해당첨 내용 확인 가능 - 조화기간(10일)이지나더라도 (2마이페이지→ 참약제한사항확인 또는 (2형약산통방 → APT(참사실 조희를 통해당첨 내용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 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 내용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내용이 없음'으로 표기됨) -당첨결과는착오안내가능성이있으므로유선 및서면 등별도통지하지않습니다. \*당참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 지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축 안나 일반공급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중동 1131-5번지) 당사홈페이지:www.정해모로스마트시티.com ※배우자분리세대의경우배우자서류반드시지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용 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서류 제춬은 견본주택 방문 전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기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기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정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 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 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를 바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섀	류유형			
갼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시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산청 불가/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 (본인 발급용만 가능)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돗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알자, 세대주 및 세대주 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시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계 포함하여 발급
<i>ሉ</i> 통 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L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작계존속 등 공급신청 와의 관계)
	0		출입국시실증명원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 ※기관추천 특별공급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신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시 생략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25년 이상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군복무기간명) ※25년 이상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병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 근무자		0	해외체류증빙서류	본인	<ul>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산청자만 생업에 직접 중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 경우 생업 총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국내가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적인 인)등</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사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역동</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령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불인</li> </ul>
근구시 단신부임)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추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산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발급기간: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존주택 :분조건 당첨자		0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차분으로 당첨된 자
	0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비치]소득및지산요건작성 〇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 본인및 사고일 이유 알뺑포스노구족이라니요 가 시 교 보험공단) 보험공단) 보험공단 보험공단 보험공단 보험공단 보험공단 생각 사람이 전부 표기되어야하며, 성명 주민등록반호(됐다리 포함) 표시로 발급 생각 보다 모든 보다 되었다면 보다 되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 이유저 위에게 사이 NAP 데 이상 파물르미즈 1천으로 여자으배 모두보 르게 N나 다 다 이상 파물르 소득증빙서류 ※전년도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이닌 경우→전년도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제출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 ·[견본주택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이닌 경우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지 혼인신고일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작계비속 \*건인교보인 폴란인시마르시아도 다이드 - 하다 이 \* 기독관계증명서상등재된모두의주민등록번호 됐지리 및성명 등 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나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임신증명및출산이행 본인또는 메OTL •[견본주택비치]임신의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지 노부모부양기점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비치1기점산정기준표작성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직계비속 •만30세이상의미혼인자녀를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시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발급기간: 직계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지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보면 변양 특별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비속	•출입국기복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작계비속 부양기족제의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 류한 경우 ※발국기건1: 작계 비속의 출생명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0		기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작계존속이 배우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탓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툇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0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간당보험법」제4조에따른 국민간당보험 요앙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앙기관명 및 요앙기관 연락차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이상 작례니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년간의 내역)
	0		생애최초자격요건확인서	본인	•[건본주택비치]소득및자산요건작성
		0	기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제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제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나를 자녀로 안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간당 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자격변동 시항이 전부 표기되어야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되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소득입증서류 <b>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b> 참 <b>조</b> 1또한 배우자 분라세대는 분라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인등록표상의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소득입증서류 포함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이난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을 제출
	0		소득세납부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신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 부 입증서류 [생)屆초 특별공급 저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자산입증서류 <b>산혼 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b> ※ <b>주민등록번호 공개</b> · 소독기 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역기준을 출족하는 조건으로 산청한 자는 주택공급산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서류를 모두 제출 · ట급기관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rosgb.d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 는 산청/결과)
		0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전본주택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이상직계비속을미혼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주민등록번호 됏지리 및성명 등전부표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li>·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안정받고자하는 경우</li> </ul>
		0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기능해야함)
		0	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비치]임신의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희경위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가점제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비치]가점제당첨자인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

			진앙사입앙관계승명서	배우사	20 101-220 1202 100 1
		0	가점제산정기준표	본인	•[견본 <b>주택비치]</b> 가점제당참자인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작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작계존속이 배우지가 없거나 배우지와 대 분리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기쪽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이상 작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존속	• 작계존속을 부앙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출압국기목출력 여부를 V로 설정하여 발급 ※작계존속 부앙가족 제외 사항 : 압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는부앙가족에서 제외 ※발급기간 : 작계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압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점제 당첨자		0	<u> </u>	직계비속	• 작개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작재비속 부양가족 제외 시항: (만3에 미만) 압주자모임코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증접 경우민30에 아잉 업주자모임공고일 기존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 작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압주자모집공고알까지 지정하여 발급
		0	청약통장기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배우자의 창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업(~3점)한 경우, 이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달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업(1-3점)한 경우, 이래 경로를 통해서류 발달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간강보험법」제4조에 따른 국민간강보험 요앙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앙기관명 및 요앙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청자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 포함)을 부앙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0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간강보험법」,제41조에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앙기관명 및 요앙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청자의 30세 이상 작계나속을 부앙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모집광고일 기준과거 1년간의 내역)
	• <b>Ł</b>	인이외아	는모두대리인(배우자및직계존	-비속포함)으로	리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대리인	0		위임장	본인	· [전본주택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날인
궤세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본인 발급용 (용도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기능합)
	0		대리인신분증및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제외)
부적격 통보를		0	무주택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하가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등 • '소형자/주택등인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기격 증명원 등) 기업 디즈로(파이오 조대왕)

투식격 통보를		0	<u> </u>	해당수벽	• 소형 자기수백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수백공시기석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0	당첨사실소명서류	해당서류	• 해당기관의당첨시실 무효확인서 등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0	해당주택에대한소명자료	해당주택	<ul> <li>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에 다하기결정경에 매각결정통지서금에 등)</li> <li>등기사항증명서(임치주택) 양차주택경 공에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에: 배당표 배당요구산청서 등/ 공에: 배분계산서 등</li> </ul>
출하시: - 주민등록 른 세대! - 주민등록 경우 변: ※ 2005.7 표기를	기 바음 록표등 원의 : 록초본 경서류 '1. '주 요청	합니다. 본 발급 성명, 주 ! 발급사 류를 제 라이 발	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나 만[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 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세대 - 민적사항 변경 용 : 개인 인적 으로 발급 민등록표 등 :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 P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I 링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 I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일반근로자	<ul> <li>④재직증명서(출산휴가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작기간을 명시하여 발급)</li> <li>⑥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li> <li>※전년도 휴작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김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작인날인 '배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또는 소득개별 근로소득 완천징수부</li> <li>※점수 휴직으로 월명군소득 산정이 아라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작기간의 근로소득완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li> <li>※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li> </ul>	③해당직장 ⑤해당직장/세무서					
i+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③재직증명서 ⑥금네도 소득시변 근로소득원천장수부 또는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진수증명서 ※근로기간이 가뭄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장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보인 자인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장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 로(연명)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③. <b>⑤</b>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⑤ 해당직장					
=	직장가입자이나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안되는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해당직장 ⑤세무서					
9	변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③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⑤시업지등록증	@, <b>⑥</b> 세무서					
	신규사업자	<ul><li>◎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이전가입)또는 공고일이전최근의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부본)</li><li>⑤ 사업자등록증</li></ul>						
	법인대표자	⑥잔년도 근로스득완천징수영수증 및재직증명서 ⑥전년도 재무제표 ⑥사업자등록증	<ul><li>③해당직장/세무서</li><li>⑤해당직장</li><li>ⓒ세무서</li></ul>					
Ė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스득원천징수영수증 ⑥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⑥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세무서 ⑤(ⓒ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국민/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기타	일용직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완천징수영수증 ⑥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기입내역확인서 ※작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③해당직장/세무서 ⑤해당직장					
	무직	<ul><li>●비사업자확인각서</li><li>●사실증명소득세신고사실이 없음확인</li><li>※퇴지의경우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서류</li></ul>	<ul><li>③접수장소</li><li>⑤세무서</li></ul>					
직기간이 있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	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	417-1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해당직장발급서류일체직인날인필수)	발급처	
	근로자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재직증명서		
자격	자영업자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시업자등록증	③건강보험공단	
입증서류	근로자.지영업자가이닌.자로서.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또는.시업소득세를 납부한자	<ul><li>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li>⑤날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장수영수증 원본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 (재직)증명서</li><li>※결장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li></ul>	⑤해당직장/세무서	
5개년도 산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지영업자 또는 근로자, 지영업자가이는 자료사과거 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시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카텐도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가)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여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종합소득세 신고마남자 중 결정시액이 한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개산서 추가(해당년도 포함) 제출     ⑥근로소득원천진수영수증(작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인날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진수영수증	<ul><li>예세무서</li><li>예해당직장</li><li>ⓒ해당직장/세무서</li></ul>	

※ 해당 직장, 세무 ※ 소득세 납부 입 <표3> 신혼부부/성	서 등 해당 증관련 모 생애최초 특	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t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수	⑥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⑤등가 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가 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③ ⑤ 등기소(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포함)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있는경우	추가 (해당자)	@공동/개발/주택공시가격확인원("소유부동산이건축물대장상 주택인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원("소유부동산이토지이거나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산가 오피스텔 등인경위 ①건축물사기표준액조회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일반건축물산가 오피스텔 등인경위	<ul><li>③ 행정복지센터</li><li>⑤ 행정복지센터</li><li>① 위택스 이택스</li></ul>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경우	필수	③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ros.go)d)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중명('전국구)	③대법원인터넷 등기소 ⑤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	공급 및 생(	개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신청일정 및 계약장소 032-325-6055 (10:00~16: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번지)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디

		류유형						
갼	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밟걘	서류제출대상 및 유익시항			
	0		계약금입금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0		인감도장	본인	•당참자자격확인서류제출시제출한인감증명서와동알한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대리인위임			
	0		전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본인 계약시	0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비치]이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함계액과 일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이파트계약용(본인발급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대라인위임불가/온라인발급인검증명서(본인발급용) •업주내상자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0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지격확인서류제출기한 내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확인을위해 요구하는서류일체	본인	・기타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			
	0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비치]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0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이파트 계약위임용(본인발급용)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기능)			
(1-1-111)	0		대리인신분증및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제외)			

아파트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204-553365 오정61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외2)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분양 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 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 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3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자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 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sub>5</sub>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7 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 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 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랑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볼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 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 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기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 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 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 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 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지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 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 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 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 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 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 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 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 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앙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2 건축물내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그리고 한글로 하면 하다 가는 하는 아이는 아이는 다음 하다고 하다 하는 한 다음이 하다 하는 것이 제2조제 2조대에 다른 부양권들이 마에계약서 가 분양권들이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시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에는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자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확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간실지역에 거쥬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다하다가다른 주택간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자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복사인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다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조제형에 따른 부적격지로 통료받은 날부터 3개월이나에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사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 로지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60년) 아이들 (1967년) 12에 남한 아이들이 국도로 중인증할 보고 하네요. 그에 되고 있다. 1960세이상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도 보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제외) 1점제의 부양기족 인정 여부 판단 시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기족에서 제외함 '불통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나르오) 타고 (다음에)(3~) 우리 작가도 중에와 () 조르니 작의 당시에 가장이 살아 아니아(그라 아니아) 더 작의 글로니까 다가 작아 되었다. 경우로사(업본체(로부터 제)조조계경(에(로) 부작자(로) 통보면 당부터 3개월 (아내아)(를) 별실시키가나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장리한 경우 무하기간물(종전의 '건축법,선법률 제786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제요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기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세대만 가「주택법시행령」제3조제항제1호에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

가는 가입하여 5차에 보고 제공에 되었다. 도권은 '학생전원)이 하입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제곱미터 이 하로서 별표 1 제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 하입것 )「주택법시행령」제2조각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법시행령」제3조제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주택또는분양권등으로서 3)에해당하지않는것 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제외) 60m³이하 1억6천만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85m²이하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고f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를 준용함)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고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각 호 및 제3조제(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가 내는 가는 것 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발 <b>코니 확장 공시금액</b>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확장금액		확장금액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42A 5,000,000			000,000	500,000	4,500,000	
아래의 계좌는 아래의 계좌5 습니다. 예약금 납부 : 판명된 자는 : 예약금 및 잔금	: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논명기간 이후 환불이 기 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	발부 계좌로 분양대금 합니 확장 공사비는 인 병을 반드시 기재하여 바능하며, 환불이자는 1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	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 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 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 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	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	Ė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정	비사동생	우리은행	1005-004-807596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 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 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기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 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 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 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 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 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 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 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됩니다 비고(제조사명) 거실+침실1(안방)+침실2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기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은 에어컨 설치금액에서 미옵션시 적용되는 매립배관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분 약식표기(타입)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설치품목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냉장고 + 측면장 삼성 RF60DB9KATAP 5,500,0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기본 냉장고장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시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 옵션 선택에 따라 전	입별로 크기가 상이하		마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는미	
3) 거실 Style Up						(단위 : 원, VAT포힘
걘	약식표기(E	옙)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거실StyleUp I	42A		거실 스타일업 (우물천장+직간접조명 2면)	800,000		중복선택불가옵션
거실StyleUp II	420		거실 특화슬라이딩도어(3연동)+수납장+조명 2개소	3,000,000	0-11-2/16	
• 세대 평면 특성에 띠	라 평형별 유상옵션 7	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방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갼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상부장 메탈 PET + 상부장 하부리인조명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4300,000 42A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및 마감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거실 아트월 마감은 600\*1200각 타일, 복도 벽체는 벽지마감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형 옵션(상부장 메탈 PET 마감, 하부라인 조명,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 등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300\*600각),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인조대리석(MMA)이며,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 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 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디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기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추가선택품목공사비 1005-004-807596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동·호수,계약자명필히기재요망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6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6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한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 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일: 2027년 07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 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 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 (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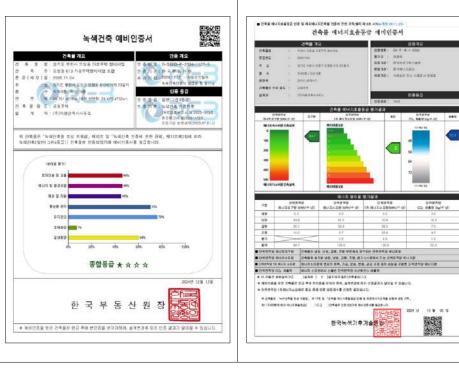
• 관리사무소, 키즈카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세대창고 등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도서 기준이며,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디

■ 내진 설계					
<b>구분</b> 메르칼리 등급		내진능력 VIO.204g			
· 신원성구력의 성급	의무시항	적용여부	시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악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빙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애너지절악설계기준, 제6조제4호애의한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냉난방설비 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애너지절악살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와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애너지절약살계기준, 제8조제2호애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기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지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 IV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 너지가 IV제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 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당 및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IS규격에서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적용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내에는 각실별난병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애-'지절약설계기준,제'0조 제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애너지절약설계기준,제'0조 제2호애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악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호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걘	건축감리	전기소방및정보통신감리
화사명	미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동화이엔씨
감리금액	796,981,900	374,000,000
사업수제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OTION TITLITUU IOITTI	(ALLIE TO)
상호명	오정6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HJ <del>종공</del> 업
법인등록번호	121171-0007794	180111-060250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2번길 14,4층(오정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 01212025-101-00034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 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두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로부터받는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납부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 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관지]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지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기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아

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사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업지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잘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시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또는 각 단지별 대지면적의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구역내도시계획도로의선형이일부변경될수있으며,이에따라각단지의대지면적의증감이발생할수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장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입주 이전 별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본이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 공사중 현장여건의 변화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아트월, 소파위치, 창문열림방향, 외부 조망 등이 달리질 수 있음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미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계획이 일부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본공동주택(이파트)의 입주 후불법 구조 변경 시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계약체결전 현장, 주변현황,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시유가 있음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및 대지경계선 구간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가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간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후단지주변의개발및재건축/재개발등으로인해내외부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포함)이변경될수있음 계약자는계약전시업부지현장(주변현황포함)을반드시확인하여야하며,분양후단지주변의개발및재건축등으로인해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포함)의변경이될수있음 공통사항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지주변도로는 대관협의 및 요청에 따라 도로 레벨, 차선수, 도로 폭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경로당, 키즈카페등)은 사업주체가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

계하기전까지위탁관리를할수도있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사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일부세대는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당해사업구역내공동주택부지외기타부지(도로등)는해당계획이변경(조경계획,부지의용도사업계획등)될수있음 • 기타현장실시공시품질개선 및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 및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는동간거리로인해일조및조망간섭이발생할수있음을충분히인지하고계약해야함 구역내별도근린생활부지가이닌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대지가별도로분리되어있지않고대지지분을가지고있음 • 입주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을 주치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동 P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접근가능해야함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기하므로 향후 각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시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함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의거공동주택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입주7일전부터60일간입주민의확인이용이한곳에공고할예정임

각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인하가 및 주변의 개발으로 인해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알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시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 한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본이파트의 내부구조벽체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기정용계량기 중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해야함 시업주체와시공자의 귀책 사유가이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시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엔지니어드스톤등)의 경우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시공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지의 판단은 KS 기준 및 PIT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을 • 시트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회장대등)의 PET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재질과 색상

•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혹은 업체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제시될 수 있음 기구표면 및 창호 마루재는 태양광의 노출에 따라 표면이 일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본공사시세대 내부미감자재의 색상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강마루특성상반복되는패턴으로인위적인느낌이들수있으며,본공사시유사색상및무늬를지난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터제품으로대체시공될수있음 벽체도배미감째는봉투비름에의한부착으로테두리와매립박스주위로만접착이됨그외부위는들뜸으로느껴질수있지만광법상특성이며하자가이님 견본주택과 홍보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미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건본주택의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가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견보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경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리한 시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치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시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시항으로 향후 변 견본주택 및 키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비람 연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시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가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아파트는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서대 평면도를 우산함 모형,CG와견본주택시공내용이상이한경우견본주택을 우선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확인하시기 비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미김재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무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

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 평면특화 등의 유상/무상옵션이 추가로 표현되어 전시하였으나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 용되므로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계약체결하시기비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 유상[무상옵션: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 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디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견본주택내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보관소 등), 바닥미 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마감 주변환경 및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시양, 열림(카페)빙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람

liS사업지는사업시행변경인가접수도서를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추후인허가협의시위치 및 크기,형태,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 쓰레기 보관소는 사용성 및 해당 자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규격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 입주민의 요구에 의한 위치이동은 불가)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동의저층부및고층부세대는가로등 및 이간조명 주차장 진출입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미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과 입면 변경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 주거공용면적 및기타공용면적은 전체 단지의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공사중 상품성 기능,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경비실 쓰레기, 따전거 보관소 주차게이트, 도로선형, 기타부대시설 등의 추가,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설계 변경될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기부채납되는 도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 대관협의,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지붕구조물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미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 장여건에 따라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승강기 각종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경계선에 인접한 구간은 고자차로 인하여 경사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수 있고 단차부에 옹벽이 조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대관요청,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로(차도, 보도), 옹벽선형 및 높이, 각종 옥외 시설물, 녹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사생활권 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하부 시설물(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저수조, 정하조 등)의 DA(급기/배기), 배기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수증기 발생,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 의피해가발생할수있음(계약전배치도및분양자료를직접확인요망) 단지출입구(보행자, 차량, 비상차량 등), 자하주차장램프(캐노피 포함)등과 인접한 주동 및 세대에는 전망간섭,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계약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 • 캐노피미감재 위치 색상,돌출깊이는 도로계획,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난간대의재질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철제문 방화문의 설치위치, 폭 높이, 형태,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층(저층) 전 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거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외부PL창호가난간이설치되어짐에따라이삿짐사다리차사용에제약이발생할수있음 • 단지레벨차이로 형성된데크면에 각종기계실 전기실 팬룸등 부대복리시설의 환기를 위한 그릴 및 환기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및 지하주치장 지정 및 기초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및 현장 재하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을 쓰레기 보관소는 본공사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과의 간섭 등으로 그 사이즈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24조의2]에의거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관한상호협의결과에따라지하주차장 1층 휀

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경관심의 조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단지 경계부에 방음벽(15m)이 설치되며, 방음벽 인접세대는 채광, 쪼망, 환기가 불리해 질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의 무형 및 부양호부물 현장 등을 환인 후 계약하시기 비란 본이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키즈카페,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놀이터 등과인접한 일부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소음,조망,일조,진동,냄새 측면에 본이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세대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사생활권이 침해당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처장 진출입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치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처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 근린생활시설상가)에인접한이파트의 경우입주 후입점상기의 업종에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과 근생시설의 실외기가동시 소음이 발 배치상102독은이파트부대시설/경로당 키즈카페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사설의 실외기가 인근에 ; 치될수 있으며, 이로인한 진동 소음, 또는 음식물 조리에 따른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치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거리가 상이 [8 • 101동 옥상(지붕층)에 정화조 배기덕트 입상 및 팬위치 설치됨 /102동 옥상(지붕층) 태양광 패널 및 기초패드 설치/각동 준공전 무선통신사 중계시설 임의 1개동 옥상 설 • 101동 옥상(지붕층)에 정회조 배기덕트 입상 및 팬위치 설치됨에 따라 하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동 주변으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시설(지하층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동통신실 휀룸, 저수조 빗물저류조, 실외기실 정화조)과 당해 DA 주변에는 해당시설 가동시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 이발생될수있으며,DA의위치및규모,수량은변경될수있음 • 101동, 102동 세대 인근에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이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키즈카페,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놀이터 등과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

막이파트 주변에는 저수조 저류조 펌프실 발전기실 정희조 휀룸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어 진동 소음 냄새(매연)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로비, 필로티, 입면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공간 반자의 설치 유무,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을 • 옥상난간 턱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미감을 고려하여 문폭과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자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양여닫이 또는 외여닫이가 적용된 (동별로 적용여부가 상이함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4 알부동 옥상(이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이 배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동미다 설치되는 용량 및 크기가 상이함)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날씨에서는 옥상에 설치되는 안전난간대 등의 구조물에서 진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여 세대로 전돌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탑프레임, 옥상조형물의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설계변경 될 수 있 • 외부 입면 형태(옥탑프레임 및 옥상조형물의 형태/미감재(재질) 입면문양, 측벽조형물형태/미감재(재질) 측벽문양, 코어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형태/미감재(재질) 당 • 가스배관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동 옥상에 전피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TV 공청 및 위성수신 안테니와 이동통신용 안테니가 설치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서에 인접한 주동에는 다지 내외가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시면 처리 공번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처리구가이 설치될 수 있음 단지 주동 지하층 내설비, 배관설치를 위한 PT 공간이 설계되며 단지 내외부로 이동이 제한 될 수 있음. 지하층 내 P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관류율기준에 의거 단열 및 미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을 • 주동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 • 승강기 설치는 신법을 적용하여 설치되며, 내외부 외장은 당사 설치기준에 따른다 엘리베이터기계실창호의크기,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주동 지상 저층부 석재 미감재와 상이한 뿜칠마감이 적용될 수 있음

 주동옥상구조물측면에는 줄눈이설치되지않음 •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 보관소, 로비공간 등)은 공용시설물이며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저층부마감재의세부사항은변경될수있음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아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동 색채 옥외시설물 및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는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외부창은 발코니구조나형태에따라창호크기나시양이상이하게시공될수있으며,옵션선택에따라발코니외부창호(샤시)는설치또는 마설치세대가발생활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신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함 • 아파트 측벽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 등은 변경될수 있음 • 이파트 측벽 차별화 부분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위치별 금속마감 적용에 따른 눈부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신란등에 약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비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일부저층세대의경우동출입구형태에따라동현관및장애인경사로설치에따른시각적간섭이발생될수있음

• 주변 도로 주변 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세대 전면에 옹벽 사면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일조 조망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코이인근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지상층출입구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소방용 연결송수구,상수도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동지상층출입구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소방용 연결송수구,상수도소회전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경로당은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비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각단지의 부대시설은 대지특성상 지하 또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치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키즈카페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트) 알체는 동선,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안하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은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뮤니티 특화사인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인테리어 계획, 색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접수도서 기준의 내용으로 인허가협의 법규변경, 시공시 현장여건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는 미제 공품목(책상,의자,테이블,소파,인테리어비품등)임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단,추후본공사시그위치는변경될수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키즈카페,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인 • 하기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다른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지나 그리생활시설이 이과가 내보 거축계회이 변경은 () 대표 계약자와 무과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진입로는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함(근생시설의 주차면은 위치가 정해져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수목의 종류 및 규격, 위치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지장물과의 간섭 및 설계개념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을 • 단지내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전체적인위치와개소 및시설내개별시설물의 종류 및수량, 형태는 설계변경 될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등이 발생 · 조경면적(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내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위치·구간·면적 자재 등대관 인허기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 시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DA/TL등건축구조물과실외기설치로인해저층세대의조망및생활권에침해를받을수있으며이에관한이의제기를할수없음 • 일부세대는사다리차접근이불기하여입주및이사시엘리베이터로만이용할수있고이에이의제기를할수없음 • 단지 내 경사면 발생에 따라 계단 램프 등이 삭제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경사 처리에 따른 녹지 폭축소될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기함 • 단지의 각종 식재 및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함 • 각동 옥상 조경구간의 입주사용자의 사용형태 및 방식에 따라 하부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텃밭,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키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101동지하1, 2층 및 지상층 E/V홀 부분이 지하 정화조 배기 시설과 계획되어 있음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지하주차장은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동선,기능,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위치,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접하는 층수는 경사지 특성상 동별로 상이함 지하주차장차로 높이는 지하층 27m, 지하2층 23m 계획되어 있으며, 이 보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음(주차면 약 21m 이상으로 계획됨) • 지하 동출입구는 사용성, 상품성 개선을 위해 평면 및 입면 형태, 미감재 등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층 PT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치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단지 내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치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 피한 시항임 • 택배보관함의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전기지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하기관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전기지동차 충전시설이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단지주변도로계획은향후인허가진행상황및인근단지개발에따라변경될수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 삭제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택배치량은지하1층만제한적으로진입기능하나,치량층고는 27m제한될 수 있음

택배보관함은 동별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의 안목차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 (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 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주방벽 미감, 가구, 거실특화 옵션 등의 유시한 시항 등)으로 추가되는 미감재 가구, 가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 당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티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 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내부 및세대/번역 벽체(욕실벽 PD를 포함한 비내력골조벽 조적벽 경랑벽체 등)는 현장여간에 따라 공사중에 경랑벽체 비내력골조벽 또는 조적벽으로 변경 (설계변경동의 포함)될 수 있음 • 욕실 당해층 배관은 적용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부 석고보드 벽체의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천장고는H:2,300으로일부시공오차가발생할수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미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사위부스 하 부,욕조하부,드레인하부,양변기주변,세면기하부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창호사이즈와형태에따라커튼박스유무와사이즈,가구형태는 달라질수 있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인접세대상하좌위,및동일세대내부각부위별발코니확장여부에따라추가단열공사로인하여발코니및침실기타일부구간의 백체및천정의일부가돌출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시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하부세대 비확장시 상부 세대 바닥 난방배관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됨 • 발코니확장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발코니선반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비확장세대는 천장 부위의 추기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공사시품질개선 및사용성개선을위해가구의세부사이즈 및내부구성등은다르게시공될수있음 •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디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째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째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미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세대내부의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위치로 인해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 질수 있음 • 발코니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변체 및 바단 마간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경보주택과 산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을 • 유상옵션과무상옵션 항목제공여부는 평면 여건에 따라상이할 수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비람 •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주방가구내부구성,도어열림방식및악세서리제공여부는상이할수있음 • 주동저층부차별화미감적용시, 별도미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창호의 폭과 높이가미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미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시공기준 및 품질 관리 미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음 • 욕실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위치는시공 중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산정에서 제외됨 각종인증시제시되시험성적서는 단순 생품이며 실적용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 될수 있음 · 단위세대·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미감 구배, 천장내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 세대 내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단치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해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 세대내 세부미감 디테일은 미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자가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보일러, 환기시스템장비,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치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시아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의모형및기타분양홍보물을참고하시기비람 • 제공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살내환기 구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찬정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스프링크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학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주방 외부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세대내부우물찬장(유상옵션선택사)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설치로 일부 크기가변경될 수 있음
 거실 우물찬장(유상옵션선택사) 내외 간접등 위치 및 크기가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류(사발장,불박이장,주방가구상하부장,욕실장,욕실거울,욕조,위생도기류,등은폐부위)의 벽 바닥,천장의 마감재는설치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기함. • 가구의 한지,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동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설치되는주방의상부장은수납장내부의깊이가다를수있음. 안하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 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미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완착으로 하되, 실시공시 사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 으니계약전확인바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시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계약체결최종일정은별도통보예정임) • 추가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시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설치위치 및 선택여부가상이함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

동일한 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세대 내부의 추가 단열재 설치 및 마감

• 발코니(실외기실,세탁실,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시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선홈통은 세대내의 샤프트 내부로 이동될 수 있음

 발코니 걸레받이 미감재는 방수 성능 항상을 위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함
 발코니(실외가실 등)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세탁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세탁실에세탁기상부에건조기설치시,2단선반사용이불기할수있음
 견본주택에설치된비닥타일줄눈의위치는본공사시일부변경될수있음 • 발코니(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난방 및 온수용이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미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발코니,다용도실면적 및높이가축소될 수 있음 • 본공사시발코니비닥타일니누기는견본주택과상이할수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형태 시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환기시스템장비가 설치되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이질 수 있음 발코니에 상부세대 바닥드레인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또는실외기실에설치되는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타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제의 위치, 백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

• 견본주택세대 내특수조명에 의해 가구 등의 마감재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등을 두는 발코니 및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두께 등의 이유로 법규상의 면적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다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질수있으므로 입주자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함) 단위세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 상부가 외기가 아닌경우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상부로 욕실환기용배관이 설치될 경우 천장미감재가 추가설치 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을 • 이파트 발코니 난간의 높이와 창호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발코니는동절기관리소홀로인한수도 및기타물이들어있는배관 동파등의 문제가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바림 • 발코니확장범위 및확장에 따른 발코니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함 기본형선택세대가입주후발코니확장공사를하고자하는경우인허가청에인허가를득한후공사진행을할수있음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망입유리 설치 창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어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현관문의 경우 EV 홀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실외기실도아재질은 결로등에 대한 성능항상을 위해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알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네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열림 방향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및 이파트 내 외부 미만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사공되어 질수 있음 • 참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도아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지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제로 변경되어 사공되어 질수 있음 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충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발코니확장 옵션 미선택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발코니사시)는 미제공되며, 일반 철재난간대가설차됨
 동일한 단위세대타입이라도 동, 호수에따라 창호사이즈가상이할 수 있음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총별 위치별로 시양이 상이하게 (창호 나누기 크기 변경 및 창호 프레임 추가 등)시공될 수 있음 • 창호 및 문열림방향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도면상 열림방향이 상이할 경우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외부창호의 색상은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설치의특성상발코니확장계약시에만선택할수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미선택시냉매배관이기본제공됨 12Am':거실,침실1설치(거실:스탠드형에어컨,침실1:벽부형에어컨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선택옵션에따라서시스템에어컨수량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기본제공 벽부형 냉매배관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선택시설치되는실외기에스탠드형및벽걸이형에어컨을추가로연결하여기동할수없음. • 실외기설치시세대설치요건에따라냉매배관의설치방향및형태는본공사시일부변경될수있음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의무상AS기간은준공후3년이며,소비자과실로이한AS는유상처리됨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 모델하우스에기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모델하우스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됨 • 천장형시스템에어컨리모컨은실내기1대당1개가제공됨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의실내기시공개소 및위치는본공사시일부변경될수 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장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변경될수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위치는 등기구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함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미감공사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의모델명은추가선택품목계약시별도안내예정임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통합 분전빈은 침실 설치(한국전기안전공사사용 전검사설치기준: 팬트리 및 신발장 설치 불가) 기준이며, 현장 배치 검토에 의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용급배기디퓨져위치,시양,개소등은설비,전기계통을고려하여일부변경되어시공될수있음 • 실외기실 내가스미터기 설치 위치되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당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치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바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오버플로우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지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또는실외기실에는가스배관및가스미터기가설치될수있으며설치위치는변경될수있음

 $\cdot$  소방법규에따라 10층 이하세대에는 완강기가설치될 수 있으며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1~2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발코니또는실외기실에설치되는환기시스템 및 찬장형 시스템에어컨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시공됨(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욕실배기방식은직배기혹은 공동배기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세대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내 설치되는 렌지후드 전열교환 환기설비 등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이 발생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유성옵션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압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 세대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전기국탑을설치할수있도록인프라를제공하고있으며,단전기용량3.3kW초과전기국탑을설치할경우입주자별도전기공사필요함. 일부이파트동에경관조명이설치되어조명점등시눈부심이발생할수있음. • 태양광모듈설치에따라세대내빛반사로인해눈부심이발생할수있음

• 인접단지의 설계변경 및 인하가시항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 물(수목, 시설물, 텃밭, 조경, 시설, 포장, 무상귀속되는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 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 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 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 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번지 ■ 인터넷 홈페이지 : www.오정해모로스마트시티.com ■ 분양문의 : (☎ 032-325-6055)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설치되는 보일러는 난방 및 온수용이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